

##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에 대한 개관

정보신청기관 : 국무총리실

### I. 들어가며

오늘날 토지·자본 등의 유형자산이 경쟁력의 원천인 산업사회에서 정보·지식에 근거한 기술력 또는 디자인 등 무형자산 중심의 지식기반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특히 무형자산 가운데 권리화된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함에 따라 국가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적재산권의 창조와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미국이다. 미국은 1978년 카터 대통령의 지적재산 재판기능 강화 제언이 있는 이후 1982년 특허재판소로서 연방순회항소재판소(CAFC)를 설치하여 특허관련 소송을 일원화함으로써 지적재산 관련 소송의 효율화 및 판례의 통일성 확보를 달성하려 하였다.

아울러 레이건 대통령이 설립한 산업경쟁력위원회 보고서인 영리포트가 1985년에 공표되었다.

동 보고서는 미국의 기술력이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급속히 우위성을 상실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과학기술의 진흥을 도모하여 국내외에 있어서 미국 지적재산 확보의 강화등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TRIPs)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적인 지적재산권 보호의 제도적 기초를 확립하기에 이르렀다. 미국은 그 후 현재까지 특허권 강화정책을 실행하여 국제적인 산업경쟁력의 향상에 성공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90년대의 장기 불황을 극복하고 산업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적재산을 선택하였으며, 총리가 직접 지휘하여 국가전략으로서 '지적재산입국(知的財産立國)'을 내세우며 범국가적으로 지적재산권 추진정책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제도

적인 지식재산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sup>1)</sup> 다음에서는 최근 일본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련의 정책들과 이에 따른 구체적 조치들을 검토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 II. 일본 지적재산기본법의 내용

### 1. 입법배경 및 경위

일본이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배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세계경제는 단순한 제조기술에 바탕을 둔 대량생산체제에서 고도한 지식에 기반을 둔 지식경제체제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특히 과거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한 경제개발을 이룩한 일본으로서는 저임금을 바탕으로 대량생산이 가능한 분야에서 가격경쟁력 약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술과 지식을 창조하여 경제발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기 위한 사회적인 유인제도가 필요하게 되었다.

둘째,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일본 제조업의 국제경쟁력은 한국, 대만,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의 급격한 경제성장과 기술추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약화되어 왔다.<sup>2)</sup> 그러나 국가경쟁력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수준에서는 높은 순위를 지키고 있어, 과학기술력이 국가경쟁력 향상에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특허 등 창조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였다.

셋째, 일본기업의 상표, 의장 및 특허권 침해 사례가 해외에서 급증하였다. 과거 일본 정부 및 기업들이 지적재산의 보호를 소홀히 한 결과,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일본제품의 모방품 및 해적판이 범람하게 되어 일본제품의 잠재적인 시장 상실과 브랜드 이미지 저하 등이 크게 우려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일본 정부는 해외지역에서의 일본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가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고이즈미 전 총리는 2002년 시정연설에서 ‘지적재산입국’을 국정 주요과제의 하나로 선언하였다. 이 선언은 즉시 정책화되어 지적재산제도에 대한 포괄적인 심의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같은 해 3월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지적재산전략회의’가 설치되어 일본의 지적재산과 관련된 제도개혁이 본격



1)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 일본 전 총리는 2002년 2월 4일의 시정연설을 통해 “연구활동과 창작활동의 성과를 지적재산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하여 일본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국가 목표로 한다”고 하는 소위 ‘지적재산입국선언’을 통해 기존의 일본 정권과는 달리 지적재산을 매우 중시하는 정책을 표방하였다.

2) IMD가 발간하는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2004”에 따르면 일본의 국가경쟁력은 1991년 2위에서 2002년 27위까지 하락하였다.

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이 회의는 2002년 3월부터 2003년 1월까지 약 8회에 걸친 집중적인 심의를 실시하였고, 2002년 7월 ‘지적재산전략대강’<sup>3)</sup>을 발표하였다. 대강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설명되어 있는 지적재산 관련 문제가 향후 일본의 지적재산권전략의 기본방향으로 설정되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행동계획들을 언급하면서 4가지 전략, 즉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와 활용 및 인적 기반의 충실을 기하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한편 지적재산전략회의를 통해 분출된 산업계의 요구를 수용하여 대강에서 제안한 바대로 2002년 12월 4일 일본 지적재산 관계법의 근본이 되는 모법과 같은 ‘지적재산기본법(법률 제 122호 : 2003년 3월 1일 시행)’을 제정하였다.<sup>4)</sup> 동법은 지적재산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나타낸 것이지만, 법률사항으로는 제24조 이하에서 총리를 본부장으로 하여 지적재산권 전략의 체계적인 수행을 담당하는 ‘지적재산전략본부(이하 지재본부)’의 설치를 규정하여, 2003년 3월 출범시켰다. 지재본부에는 여러 전문조사회가 설치되어 심의결과를 2003년 7월 지적재산정책의 구체책인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지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발표되었다. 이 지재추진계획은 앞에서 설명한 지적재산전략대강을 개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

으며, 해마다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발표되고 있다.

## 2. 제정목적

지적재산기본법은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기본틀을 형성하는 획기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본산업의 국제경쟁력의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지적자산을 핵심으로 하는 부가가치 높은 사업활동에 의해 건전하고 활력 있는 경제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긴요한 과제인 것을 감안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과 관련하여 ① 기본이념 및 그 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및 사업자의 책무 등을 명확히 하며, ② 지재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③ 지재추진계획의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시책을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동법의 제정목적에서 일본 지적재산전략의 변모를 확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지적재산전략의 범위를 연구·개발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사업화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으로 설정함으로써 일본의 지적재산전략이 과학기술 정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본문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kettei/020703taikou.html> 참조.

4) 동법의 전문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hourei/021204kihon.html> 참조.

### 3. 구성

지적재산기본법은 모두 4개의 장 및 33개조와 부칙 2개조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제1조~제11조)은 총칙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내용은 동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지적재산 등의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또한 부가가치 높은 지적재산이 풍부하게 만들어지고, 이것이 적절히 보호됨과 동시에 경제, 사회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활용됨으로써, 널리 국민이 그 혜택을 향유하면서 새로운 지적재산의 창조를 촉진하여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풍요로운 문화의 창조 및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사업 재구축에 의해 일본 산업의 활력 재생, 새로운 사업의 창출 및 취업기회의 증대를 가져와 경제 구조개혁의 추진 및 산업의 국제 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다는 기본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다(제4조). 아울러 지적창조 사이클을 이루는 국가, 지방공공단체, 대학, 사업자 등이 연대하여 지적재산전략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등의 책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제2장(제12조~제22조)은 지적자산을 통한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관련하여 원론적인 당위규정을 나열하고 있으며, 대학의 연구개발의 촉진 및 대학으로부터 사업자에의 지적재산 이전의 원활화(제13조),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의 권리 부여절차의 신속화(제14조), 권리 등의 지적재산분쟁처리의 신속화 및 국내외의 지적재산침해의 단속(제15조 내지 제17조), 지적재산에 관한

교육·학습의 진흥 및 홍보활동의 강화 등을 통해 지적재산에 관한 지식의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과 동시에 학교 등과 연대하여 관련 전문가를 육성하고 확보하는 것(제22조) 등이 주된 내용이다.

제3장에서는 지재본부가 추진해야 하는 지재추진계획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주된 내용으로는 지적재산의 창조, 보호, 활용 및 인재의 확보에 관해 정부가 집중적이고 계획적으로 강구해야 할 시책을 구체적인 목표와 달성 시기를 정하여 설정하고, 지재추진계획의 달성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며, 필요한 법·제도 개정의 실시 등이 있다(제23조).

제4장(제24조~제33조)에서는 지재본부의 조직과 사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즉, 내각에 동본부를 설치하고, 지적자산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를 감안하여 지적재산정책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적어도 매년 1회 지재추진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재본부는 작성된 지재추진계획의 실시를 추진하면서 지적재산정책들 중에서 기획에 관한 조사를 심의하고, 이들 정책의 실시를 추진하며, 종합적인 조정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제25조). 이때 계획의 책정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수집에 관계 관청이 협조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지재본부의 위상이 관료조직의 상위조직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편 지재본부의 조직에 관해서 본부장은 총리가 담당하고 전 각료가 참여하도록 하여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부분부장으로서는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내각관방장관, 문부과학대신, 경제산업대신 등 4명이, 나머지 국무대신과 민간 전문가들이 부원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제26조 내지 제29조).<sup>5)</sup> 한편 지재본부는 지재추진계획에 관한 중요한 정책연구를 위하여 전문조사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지재본부령 제2조), 현재 콘텐츠강화전문조사회와 지적재산경쟁력강화 및 국제표준화전문조사회 등이 설치되어 있다.

### Ⅲ. 지적재산기본법의 영향

#### 1. 개관

일본에서 종래의 지적재산정책은 관계 관청마다 따로 실시되고 있었으며, 그동안 통일되지 않고 관계부처간의 이익이 서로 충돌된 결과, 국익을 해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기본법이 모법으로서 기본적 이념과 그 실현을 도모하는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본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지적재산제도개혁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지적재산기본법 중에서 실정법으로서의 의미가 있는 조항은 총리 직할의 지재본부의 설치이다. 동 본부가 국가기관으로서 정식으로 설치되어 정책의 대강을 결정함으로써 기본이념의 실현을 도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에 의해 동법이 단순한 프로그램 규정이

아니라 의미가 있는 법이 되었다.

아울러 제23조에 따라 지재추진계획이 책정됨으로써 제도개혁의 움직임이 빨라져 많은 지적재산 관계법이 개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지금까지 개정된 법률은 특허법, 실용신안법, 의장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중묘법, 민사소송법, 재판소법, 관세정률법, 신탁업법 등이 있고, 신설된 법률로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콘텐츠의 창조·보호·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범위는 매우 여러 분야에 걸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 지적재산 관련 법률의 제·개정 경과 및 내용

법률명	제·개정 내용
특허법	- 특허권의 간접침해행위 범위 확대(2003.1.)
부정경쟁방지법	-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형사처벌의 도입(2004.1.)
관세정률법	- 수입통관금지신청제도의 적용대상에 특허 침해를 포함(2003.4.) - 특허침해상품을 수입한 자의 정보를 특허권 리자에게 제공(2004.4.)
민사소송법	- 특허권 소송의 1심을 동경·오사카 지방재판소에서 동경 고등재판소의 직할관할로 함, 소송절차에서 비밀정보공개 제한(2004.4.)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법	- 동경고등재판소 내에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설치하여, 특허 등 항소사건을 심리(2005.4.)
저작권법	- 영화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70년으로 연장(2004.1.) - 침해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2004.4.) - 해외판매된 상업용 레코드의 역수입을 일정기간 금지(2005.1.)



5) 현재 민간 전문가로는 동경대학 명예교수인 中山信弘 교수 외 9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명단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kousei.html> 참조.



법률명	제·개정 내용
특허법	- 직무발명에서 증업권의 발명대가분을 개정(2005.4.)
상표법	- 지역명과 상품명으로 구성되는 상표에 대해 단체상표로서 조기등록 가능(2005.6.)
종묘법	- 육성자권(育成者權) 침해에 대한 벌칙적용을 판매자에게도 적용(2003.7.)
파산법	- 특허권 라이선스 계약시 라이선스 제공자 파산에 대한요건을 정비하여 licensee를 보호(2004.)
콘텐츠의 창조, 보호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정부가 교육 또는 오락 등을 위하여 발주한 콘텐츠 개발 사업에 대하여 콘텐츠의 소유권을 개발자에게 귀속(2004.6.)

이 중에서도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동경 고등재판소의 지부로서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치이다. 동 재판소를 특별재판소로 하지 않고 동경 고등재판소의 한 지부로서 취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재판소의 지적재산부문에 대한 평가를 높였으며, 예산·인원 면에서도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공헌하고 국제적으로도 주목을 받았다.

다음에서는 지적재산고등재판소를 중심으로 하여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일본 소송제도의 개혁에 대한 대략적인 검토와 지적자산을 창조, 보호, 활용하고 콘텐츠 비즈니스를 확대하며, 이를 지원하기 위한 인재육성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는 지재추진계획에 대해 살펴본다.

## 2. 지적재산보호를 위한 일본 소송제도

### (1) 지적재산고등재판소의 설치

2004년 6월 18일 제정된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설치법’은 일본 경제·사회에서 지적재산 활동이 진전됨에 따라, 그 보호에 관하여 사법이 수행해야 할 역할이 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상황에 입각하여 지적재산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을 한층 더 충실하고 신속하며 전문적으로 다루는 재판소를 설립하여 전문적 사건처리를 충실하게 준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 아래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2005년 4월 1일 특별 지부로서 동경고등재판소에 설치되어 대합의 사건을 다루는 1개의 특별부와 기타 4개의 부로 설치되었다.<sup>6)</sup> 또한 전문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재판사무의 분배 등 일정한 사법행정 사무에 대하여도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있다.<sup>7)</sup>

동 재판소가 담당하는 대상사건으로는 ① 특허청이 내린 심결에 대한 불복신청으로서의 심결취소소송(설치법 제2조 제2호),<sup>8)</sup> ②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중에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반도체 집적회로의 회로배치 이용권 및 프로그램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에 관한 소송의 항소사건(제2조 제1호), ③ 민사소송의 항소사건 중에서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프로그램의 저작물



6) 사법관단의 통일이 조기에 요청되는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5명의 합의체(대합의)에 의한 재판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타 일반적 인 지적재산 관련 사건은 3명의 합의체에 의해 재판이 실시되고 있다.

7) <http://www.ip.courts.go.jp/kor/aboutus/history.html> 참조.

8) 따라서 이와 관련한 일본의 모든 항소사건들은 지적재산고등법원에 집중되고 있다.

에 대한저작자의 권리를 제외), 출판권, 저작인접권, 식물의 품종등록에 의해 발생하는 육종자의 권리, 부정경쟁에 의한 영업상의 이익침해와 관련된 소송의 항소사건(제2조 제1호) 가운데 동경 고등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 ④ 동경 고등법원 관할에 속하는 민사 및 행정사건 가운데 주요쟁점의 심리에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건(제2조 제3호) 등이 있다.

## (2) 대합의제(大合議制)의 도입

2004년 시행된 개정 민사소송법 및 특허법·실용신안법에는 특허권 등에 관한 침해소송의 항소심과 특허·실용신안의 심결취소소송에 대하여 5인의 재판관이 심리하는 소위 대합의제가 도입되었다(민사소송법 제310조의2, 특허법 제182조의2). 산업계의 최대 요망사항의 하나인 사실심 단계에서 조기에 판단을 통일할 수 있는 사법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그리고 지적재산고등재판소는 무엇보다도 사실심이고 최종적으로는 최고재판소가 법률심으로서 법해석을 통일기능을 수행하게 되지만, 재판소의 판단은 때로는 비즈니스 룰을 정하는 효과가 있고, 조기에 룰이 정해지기를 기대하는 산업계로부터 최고재판소의 판단까지 가기 전에 일정한 신뢰성이 있는 룰을 형성해 주기 바라는 강한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심 단계에서 사

실상 조기의 판단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채용되었다.<sup>9)</sup>

## (3) 전문위원제도의 도입

최근에는 기술분야가 첨단화·세분화되고, 기술발전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특허권의 대상이 되는 최첨단 기술내용 등에 대해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위원이 지적재산소송의 변론기일 등에 출석하여 설명을 함으로써 지적재산 관계 소송의 정확하고 신속한 심리판단의 실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4년 4월 1일부터 전문위원제도가 도입되었다(민사소송법 제92조의2 내지 7). 전문위원제도는 전문적 식견이 문제로 된 사건에 대하여 전문가가 소송 절차에 관여하고 재판소 및 당사자가 전문가의 설명을 들으면서 소송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심리의 구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전문위원은 학회 또는 전문가단체의 추천을 받아 최고재판소에 의해 선임되며, 전문위원에게 설명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는 기술 배경에 대한 설명, 기술내용에 관한 설명, 출원 서류와 당사자 주장 등의 서증에 기재된 전문용어의 설명, 실험성적증명서 등에 있어서 실험내용의 타당성에 대한 설명 및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 등에 관한 설명 등이 있다. 다만, 전문위원제도는 쟁점에 대한 전문위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



9) 定塚誠, “知財訴訟の現状と本年四月からの新しい知財訴訟制度”, NBL 785號, 2004. 5, 19쪽.

이 아니다. 또한 전문위원의 설명은 소송자료나 증거자료로도 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설명을 판결의 기초자료로 삼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주장 등을 하여야 한다.<sup>10)</sup>

#### (4) 재판소 조사관의 권한 확대 및 명확화

지적재산에 관한 사건에서는 전문위원 외에 재판소 조사관도 사건에 관여한다. 재판소 조사관은 재판소법 제57조에 정해져 있는 상근의 재판소직원으로서 특허청 심판관 등의 경험자나 변리사로 구성되어 전문기술적인 견지에서 재판관을 보조하고 있다.

지방재판소에서 재판소 조사관이 담당하는 조사사무에 대하여 종전에는 “공업소유권 또는 조세에 관한 사건”으로 되어 있었으나, ‘저작권’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를 담당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담당사무를 “지적재산 또는 조세에 관한 사건”으로 확대하였다(재판소법 제57조 제2항). 이러한 권한확대와 아울러 재판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적재산권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있어 당해 재판소 조사관은 당해 사건에서 재판장의 명을 받아 당해 사무를 행할 수 있는 것으로 하였다(민사소송법 제92조의8). 구체적인 사무는 변론기일 등에서 소송관계를 명료하게 하기 위해 당사자에게 질문하거나 입증

을 촉구할 수 있으며, 증거조사기일에서 증인 등에 대하여 직접 질문하거나 재판관에게 사건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는 일 등이다.

### 3. 지적재산추진계획

일본의 지재추진계획에 의하면 지적재산은 창조, 보호 및 활용이라는 세 가지 단계가 하나의 원을 그리며 계속 상호작용을 하는 ‘지적재산 사이클’을 형성한다고 한다.<sup>11)</sup> 이러한 구조에 맞추어 지재추진계획은 2003년에서 2005년의 지적재산전략을 시작하는 제1기와 2006년 내지 2008년의 세계최첨단 지적재산입국을 목표로 하는 제2기, 2009년에서 2013년까지 글로벌 지적재산경쟁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제3기로 구분할 수 있다.

‘지적재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 전문조사위원회’와 ‘일본 콘텐츠·브랜드 전문조사회’는 지적재산의 지적재산 ‘보호’에 중점을 두어 지적재산입국을 실현하고자 한 제1기와 제2기의 지적재산정책 및 실시상황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다양한 제도정비, 지적재산 보호국가라는 위상의 획득, 보호의 단계를 넘어 창조와 활용을 연계하기 위한 전략적 기획의 중요성 인식 등의 성과를 얻었으나,<sup>12)</sup> 여전히 지적재산과 관련한 환



10) 廣瀬隆行, “専門委員制度の解説と現状”, パテント Vol.58., 2005. 5, 41쪽

11) 지재추진계획 2003, 4쪽 참조.

12)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기에서는 ‘지적재산입국실현’이라는 목표를 위해 지적재산고등재판소설치를 포함한 각종 법률의 제·개정 등의 기본적인 제도개혁과 산·학·관의 협력체제를 정비하였고, 제2기에서는 ‘세계 최선진 지적재산입국 실현’이라는 목표



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가 산적해 있고, 일본이 보유한 콘텐츠 등의 잠재력을 산업으로 확대·발전시키지 못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이노베이션을 담당할 제도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점으로 확인하였다.

지난 기간 동안의 성과를 유지하고 확인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지재본부는 2009년 6월 24일 ‘지재추진계획 2009’를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제3기의 기조는 ‘활용’을 중시한 지적재산 사이클을 확대·진화에 있으며, 이를 위한 2009년의 구체적인 목표는 글로벌 지적재산 경쟁력 강화에 있다. 이 목표의 실현을 위해 ① 이노베이션 촉진을 위한 지적재산전략 강화, ② 전 세계를 겨냥한 지적재산전략의 강화, ③ Soft Power 산업의 성장전략 추진, ④ 지적재산권의 안정성·예견성 확보, ⑤ 이용자 요구에 대응하는 지적재산 시스템 구축 등의 중점항목을 설정하여 특허제도의 종합적 수정, 대학 지적재산본부 및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 기술이전기관)의 전문화, high level의 지적재산 외교 강화 등의 주요시책을 설정하였다.<sup>13)</sup> 또한 일본이 우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정전략 분야인 환경·에너지(녹색 이노베이션), 의료·개호(생명 이노베이션) 분야에서 전략적 국제표

준을 획득하고, 지적재산을 활용하면서 이노베이션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All Japan’ 전략을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지재추진계획 2010(안)을 제시하고 있다.<sup>14)</sup>

지적재산추진계획은 해마다 내용이 개선되어 방대한 내용을 담아 발표되고 있지만 결국 ① 대학 등을 중심으로 원천기술의 확보, ② 특허절차를 개선하여 넓고 강한 특허권의 확보, ③ 확보된 특허권의 활용과 표준화, ④ 지적재산에 대한 국민계몽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IV. 나가며

오늘날 일본의 지적재산제도 개혁은 2002년의 지적재산기본법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지적재산제도는 정보화의 진전과 함께 그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데, 지적재산기본법은 오늘날 일본의 개혁의 단서에 불과하고, 그 이전에도 지적재산제도의 정비에 대한 다양한 요구는 계속 존재하여 왔고 이러한 요구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것이 2002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적재산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은 지적재산



아래, 특히 모방품·해적판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지적재산입국의 실효성 확보, 지적재산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체제의 정비 등을 들 수 있다.

13) 지재추진계획 2009, 1쪽 참조.

14)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www.kantei.go.jp/jp/singi/titeki2/2010kossi.pdf> 참조.

관계법이 단순한 재산법에서 정책적 색채가 짙은 법으로 변화된 것을 의미하고 있다. 지적재산법은 소유권법에 비하여 원래 정책적 색채가 짙은 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은 지적재산제도를 이용하여 일본의 산업구조의 변혁을 도모하는 성격이 한층 더 표출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지적재산 관계법이 산업정책법으로서 국가경제 전략적인 법으로 인식되어 온 것을 의미한다. 아울러 일련의 정책들이 수립되어 집행되는 속도는 과거와 비교하였을 때,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점은 지적재산을 일본이 얼마나 중요한 과제로 생각되고 있었는지를 나타낸다.

그러나 일본에서 실시된 지적재산정책들을 경제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으로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보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경제사회의 구조도 정보화로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일본에서 진행 중인 '지적재산입국'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큰 정보화의 흐름 중 하나이며, 많은 노력도 그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적재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는 있으나 일본과 같은 국가차원의 지적재산 전략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직까지는 지적재산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다. 특히, 콘텐츠 분야에 대한 법적 보호에 관한 문제는 활발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최근 정부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에 적극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새로운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지식재

산기본법'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법은 지식재산정책에 관한 모법으로서, 지식재산 관련 정책을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이란 큰 틀 속에서 체계화해 국가적 어젠다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비록 지적재산정책부에서 일본보다 한 걸음 늦기는 하였지만 미국과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기본법 제정에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지적재산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제고시키고, 지적보호의 대상이 되는 객체들을 창조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창조된 지적재산을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제도에 대한 준비를 실시하며, 업계간 또는 부처간 이기주의를 극복하여 지적재산 강국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허 대 원

(외국법제조사원)